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4나20015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4나200150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합1031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E

2. F

3.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현

변론 종결 2024. 3. 28.

판결 선고 2024. 4. 25.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합10310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25,666,111원,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각 25,666,111원,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각 25,666,111원 및 각 그중 15,566,666원에 대하여는 2023. 10. 8.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5%, 나머지 10,099,445원에 대하여 2023. 10. 8.부터 2024. 4. 2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위 제1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E는 각 35,765,556원, 피고 F는 각 35,765,556원, 피고 G에게 각 35,765,5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0.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E는 각 25,666,667원, 피고 F는 각 25,666,667원, 피고 G에게 각 25,666,6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0.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주위적 ·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2)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

1)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피고들에게 제1차 계좌이체를 통해 각 282,2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망 A은 이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망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에게 제1차 계좌이체로 인한 망 A의 유류분 부족액 부분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제3차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망 A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제3차 계좌이체로 인한 상속분 침해분 부분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각 35,765,556원[= (제1차 계좌이체 280,200,000원 x 망 A 유류분 부족분 3/18 x 원고들의 상속분 각 1/3) + (제3차 계좌이체 181,790,000원 x 망 A의 상속분 3/9 x 원고들의 상속분 각 1/3, 원 미만 올림]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의 요지

1)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제1차 계좌이체를 통해 각 282,000,000원, 제3차 계좌이체를 통해 각 181,790,000원을 증여하였고, 망 A은 이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망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에게 제1, 3차 계좌이체로 인한 망 A의 유류분 부족액 부분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각 25,666,112원[= (제1차 각 계좌이체 280,200,000원 + 제3차 각 계좌이체 181,790,000원) × 망 A의 유류분 부족분 $3/18$ × 원고들의 상속분 각 $1/3$, 원 미만 올림]]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제1차 계좌이체의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로 전제로 유류분 반환을, 제3차 계좌이체의 무단인출로 인한 상속권 침해를 전제로 상속분의 반환을 합산하여 구하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제1차 계좌이체 및 제3차 계좌이체의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을 합산하여 구하는 것인데, 피고들은 제1차 계좌이체 및 제3차 계좌이체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 중 제1차 계좌이체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제3차 계좌이체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한 것인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인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제3차 계좌이체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인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로 하고, ① 먼저 이 사건 소 중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을 살펴보고, ② 주위적 청구의 제3차 계좌이체가 무단인출(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③ 그 인정 여부에 따라 나머지 주위적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4. 가. 유류분반환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제3차 계좌이체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인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루어져 망 A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2020. 11. 9. 분당서울대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2020. 12. 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상속인은 제1차 계좌이체 하루 전인 2020. 11. 5.경 I 교회에 73,370,000원을 기부한 후, 위 교회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상속인이 위 응급실에 입원한 후 8일이 지난 2020. 11. 17.(사망하기 약 18일 전)에 제3차 계좌이체가 이루어졌으나, 그 당시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건강상태나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유무 등을 확인할 만한 진료기록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차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제3차 계좌이체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피고들의 무단인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제1차 계좌이체로 인한 유류분 침해 여부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6.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 방식 망 A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망인의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한편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가) 적극적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는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관련 유류분 판결에서 생전 증여재산이나 상속채무액이 없음을 전제로 이미 별지 부동산 목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아 망 A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유류분율에 따른 유류분반환을 명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다[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확정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고, 아래에서 나)항에서 살펴보는 증여재산(제1차 계좌이체 및 제3차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금액) 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다른 증여재산이나 상속채무도 없으며,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망 A의 특별수익액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순상속분도 없고, 피고들이 유증받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분 비율과 증여받은 재산의 각 지분 비율이 모두 동일하므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망 A의 증여재산과 관련한 유류분 부족분 및 피고들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편의상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아래 나)항의 증여재산을 이에 포함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나) 증여재산: 합계 1,385,970,000원

피상속인은 피고들에게 생전에 제1차 계좌이체를 통해 각 280,200,000원, 제3차 계좌이체를 통해 각 181,790,000원 합계 각 461,990,000원을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1차 계좌이체 및 제3차 계좌이체에 따른 증여액 합계 1,385,970,000원[= 제1차 각 계좌이체 합계액 840,600,000원(= 280,200,000원 × 3) + 제3차 계좌이체 합계액 545,370,000원(= 181,790,000원 × 3)]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다(2020. 11. 1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고 G에게 10,000,000원이 이체된 제2차 계좌이체는 을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피고 G가 2019년경부터 망 A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출한 사정과 그 지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가 지출한 위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나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도 이 법원에 이르러 제2차 계좌이체로 인한 상속권침해 내지 유류분침해 주장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

다) 상속채무: 없음(다툼 없음)

3)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A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A의 유류분 비율은 $1/6 (= \text{법정상속분 } 1/3 \times 1/2)$, 피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1/9 (= \text{법정상속분 } 2/9 \times 1/2)$ 이 된다.

4) 유류분 부족분 망 A이 피상속인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망 A의 특별수익액(C)은 없고, 순상속분액(D)도 없어 망 A의 유류분 부족분은 230,995,000원(= 1,385,970,000원 $\times 1/6$)이 된다.

망 A	1,385,970,000	1/6	230,995,000	0	0	230,995,000
피고 E	1/9	153,996,666	461,990,000	0	0 (-307,993,334)	
피고 F	1/9	153,996,666	461,990,000	0	0 (-307,993,334)	
피고 G	1/9	153,996,666	461,990,000	0	0 (-307,993,334)	

5) 유류분 반환의 범위 및 원고들의 상속 가) 망 A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은 망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망 A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76,998,333원(= 유류분 부족액 230,995,000원 $\times$ 피고들 부담비율 1/3, 원 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A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3씩 상속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앞서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 E는 유류분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25,666,111원(= 피고별 유류분반환액 76,998,333원 $\times$ 원고들의 상속분 1/3, 제1차 계좌이체로 인한 유류분반환액: 15,566,666원, 4) 제3차 계좌이체로 인한

유류분반환액: 10,099,445원5), 이하 같다),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각 25,666,111원,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각 25,666,111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2022. 2. 10.경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후 합의를 진행하다가 2022. 4. 6.에 이르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0. 6.에서야 비로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망 A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제1차 계좌이체 및 제3차 계좌이체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임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관련 유류분 판결사건의 소송계속 중인 2021. 6. 21. 망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원고 B이 선임된 사실, 관련 유류분 판결에서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이 없었음을 전제로 유류분에 대한 판단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 B은 망 A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의 지위에서, ① 2022.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망 A은 생전에 자신의 금융재산을 처, 자녀, 손자 등의 명의로 관리해왔는데,

피상속인이 A 소유의 돈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2. 7. 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것이 아니라 A이 피상속인에게 위 예금의 처분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② 제1심 소송계속 중 2023. 6. 7.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비적 청구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피고들이 무단인출하여 망 A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를 추가하였고, ③ 2023. 10. 6.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④ 2023. 10. 10.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망 A의 상속분 침해를 원인으로 한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위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제2 예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각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이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과정 및 제1차 계좌이체와 제3차 계좌이체는 피상속인이 응급실에 입원하기 직전 또는 입원 중(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9일 또는 18일 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및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나 의사능력 등을 확인할 만한 진료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2022. 2. 10.경에는 이미 망 A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망 A의 금융재산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형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각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확인하거나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2023. 6. 7.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한 상속회복청구 또는 2023. 10. 6.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까지 제1차 계좌이체 및 제3차 계좌이체가 망 A의 동의 내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등이 관련 판결이나 다른 자료에서 인정된 적이 없고, 제1심판결에서 비로소 피고들의 무단인출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 A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1차 계좌이체 및 제3차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A의

성년후견인이었던 원고 B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A의 금융재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것은 일응 제1차 계좌이체 및 제3차 계좌이체가 망 A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인출된 것으로 믿을만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위 각 계좌이체가 반환될 수 있는 증여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망 A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6)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25,666,111원(합계 76,998,333원),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각 25,666,111원(합계 76,998,333원), 피고 G는 원고들에게 각 25,666,111원(합계 76,998,333원) 및 각 그중 15,566,666원(제1차 계좌이체에 관한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23. 10. 6.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나머지 10,099,445원(제3차 계좌이체에 관한 이 법원의 추가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23. 10. 6.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 또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준현

판사조영철

판사항병하

별지

1)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일부(2020. 11. 17. 자 피고 G 계좌로 이체한 10,000,000원에 관한 부분)를 취하하는 등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일부 감축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항소취지도 그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

3) 원 미만 버림

4) = $25,666,111\text{원} \times 280,200,000 / (280,200,000 + 181,790,000)$, 원 미만 버림

5) = $25,666,111\text{원} \times 181,790,000 / (280,200,000 + 181,790,000)$, 유류분반환액의 합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 미만 올림

6) 피고들은 2023. 4. 2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입증 등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서와 함께 녹취록,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제1차 계좌이체 및 제3차 계좌이체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추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